

제394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3월30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1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7)
13.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14.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
15. 블록체인지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7)
16.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1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18.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8)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9)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9)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9)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9)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4)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8)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6)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0)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7)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4)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9)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7)
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1)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0)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2)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5)
3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3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0)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28)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9)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4)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5)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2)
4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1)
4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3)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4)
5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5)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0)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2)
5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9)
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8)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3)
5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0)
58.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8)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6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5)
6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0)
64. 간사선임의 건
6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66. 소위원장 개선의 건
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5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0
64. 간사 선임의 건 30
 - o 간사(김영식) 인사 30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0
6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30
66. 소위원장 개선의 건 30
 - o 소위원장(김영식·허은아) 인사 31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31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3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32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32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32
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32
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32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32
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32
1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32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7) 32
13.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32
14.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 32
15.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7) 32
16.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32
1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32
18.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32
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8) 32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9)	32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9)	32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9)	32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9)	32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4)	32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8)	32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6)	32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0)	32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7)	32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4)	32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9)	32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7)	32
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1)	32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0)	32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2)	32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5)	32
3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32
3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32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3)	32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6)	33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0)	33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0)	33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28)	3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3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9)	33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4)	33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5)	33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2)	33
4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1)	33
4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3)	33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4)	33
5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5)	33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0)	33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2)	33

5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9) ...	33
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8) ...	33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3) ...	33
5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0)	33
58. 방사전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8)	33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33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33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33
6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5)	33
6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0)	33

(14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전략기술 육성법 등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법안 상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혹시 추가안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임병헌 위원님 계신데요 비록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이번에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임병헌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감사합니다.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도 잠시 왔다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위원님께 작별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환 행정실장입니다.

양성선 입법조사관입니다.

황성필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영빈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정부에서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가상융합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 등 총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15시03분)

○위원장대리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및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오늘 공청회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네 분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노성 교수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양자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광노성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광노성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양자기술 촉진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 및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기술을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의 범위가 넓고 이미 유사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 특별법안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국방, 보안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그리고 오늘 함께 논의되고 있는 양자기술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법의 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기술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올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실효성도 한번 지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전략기술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과기정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고 있고, 과기자문회의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법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투자전략 및 투자방향과 기준에 반영하고 또 부처의 반영 여부를 특위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당초 법 제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소기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전략기술원은 국방·안보 분야 주무부처인 국방부, 국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일 과기정통부가 이들 부처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국가전략기술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사이버 안전 대응 등 정보보안기술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의 기획·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직접 협력하고 있고 기관평가도 연구사업 부분은 국정원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원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적인 연구는 법률에 따라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이미 국방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연구회는 방위사업청 소속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연구원의 총괄사업책임자에 대한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부가 감사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10대 필수전략기술 중 하나로 앞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게임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체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부처에서 양자기술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표준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2018년 기준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교육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부는 표준화 추진과 함께 양자컴퓨팅 등 기술인재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양자내성암호연구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 융합법은 정보통신 전반은 물론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양자기술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 융합법에 반영돼 있는 양자기술과 관련된 조항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만 있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의 극히 일부로 양자기술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안 제7조에 있는 양자전략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심의기구라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기술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또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주개발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국정원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9조의 전문연구소와 제4장 클러스터는 신설하거나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출연연과 대학, 산업계의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설된 클러스터 중 상당수는 연구생태계보다 지자체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물론 기관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자기술 관련해서 핵심 연구자는 약 15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이들이 3개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소를 신설하게 되면 국가연구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구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큼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양자기술 연구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박노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무려 20초 가까이 아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손병호 본부장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양자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손병호 안녕하세요?

KISTEP의 손병호입니다.

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입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및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 주권에 초점을 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생산촉진법과 함께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 종합지원전략을 담은 끝없는 프론티어법을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2월에 공급망 등 국가경제안보 영향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법은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큰 AI, 양자, 우주 등 국가안보적 가치 기반의 신기술 전 분야 기술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 미국과 같은 두 트랙 전략으로 우리나라도 양자, AI, 우주 등을 포함한 전 분야 전략기술 자립과 포괄적 지원이 담긴 동법의 제정을 통해 첨단전략산업법과의 상호 보완적인 설계와 운영이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 체계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동 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최상위법으로 기존 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선정·육성·보호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 제2장 8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존의 부처별 역할에 기반한 핵심기술 육성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전략개발과 추진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발굴·육성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정·관리 주체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동법 제9조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화된 선정 절차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보다 빠르게 개발하여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법 제3장 14조 1항은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부합도, 임무중심형 연구 추진체계 구축 여부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3항에서는 전략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12조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제출 시 전략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신속하게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이 신속하고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있어서도 전략연구사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16조 1항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조사내용 간소화, 조사기간 단축, 평가 시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평가에 대한 우대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유치·양성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을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발하는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빨리 양성하고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제24조부터 28조의 조항을 통해 정확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전문·연구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적극적 확보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동 법률안의 제31조 3항에서는 지역혁신허브에 다양한 지역 연구개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에 따라 주체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중심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원의 설립 및 운용의 중요성입니다.

전략기술연구사업의 경우 고난도·고위험의 R&D 특성을 감안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사업책임자인 PM이 자율적이고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DARPA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DARPA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예산집행과 과제선정 등에서 전폭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 법률안에서는 DARPA 모델을 주로 참고하여 제34조 5항에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략기술에 특화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한국형 DARPA 체계를 구축한다면 국가안보·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승민 교수님, 메타버스산업 및 가상융합경제 등과 관련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승민 방금 소개받은 이승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논의와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입법은 되겠구나라고 업계나 산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작성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곤란할 것 같고, 오늘은 특히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의와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하고 있고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자는 얘기가 벌써 10년도 더 지난 얘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사회의식이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기존에 쌓아 왔던 법체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규제샌드박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나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화끈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기존에 정보통신 융합법이 있고 산업융합법이 있는데 굳이 또 법을 만들려고 하나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종의 규제샌드박스의 각론과 같은 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정보통신 융합법을 잘 활용했으면 수소경제법도 그렇고 자율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법들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영역의 특수성을 좀 더 살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규제샌드박스 각론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나의 단일 법진화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의 총론 그리고 각론 영역들이 다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져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상융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풀어 주는 형태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상융합이냐?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산업, 신기술 영역이라는 특수성이 더 강하고 또 보건의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확실히 먼저 풀어 주고 그에 따른 규제 개선 성과를 봐 가면서 다른 법 영역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점진적인 입법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제 개선 프레임워크는 뭐냐? 그것은 임시기준입니다. 사실 규제샌드박스라는 측면이 네거티브 규

제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한다면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현실이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허가 기준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인허가 기준이 없으면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관련된 인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아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체계에서는 개별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풀어 주는 것은 가능한데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이 룰에 모든 사업자들이 다 붙어서 그 룰에 따라서 허용을 받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모델에 연동된 특정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임시기준, 룰이라는 것을 세팅해서 관련 사업자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가 신청해도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것을 다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제 개선의 첫걸음으로 일단 삼고자 했고, 물론 법률은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은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령만 개선이 되어도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러한 개선요구가 결국은 법률 자체의 개선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규제의 합리화 방안으로 특히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자율규제 모델입니다. 다만 저는 행정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자율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나 서로 다른 생각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수 민간의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은 다른 측면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수 민간에 의한 자율 규제는 지금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히 논의되는 자율규제 모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는 공동규제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원칙을 정해 주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협회나 단체 이런 데서 제정해서 스스로 시행해 보라는 형태, 영국식에서는 공동규제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규제된 자율규제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에 가까운 자율규제의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 법안을 통해서 이런 규제된 자율규제 모델만을 추구할 것은 아니고 순수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모델도 어떤 경우에는 순수 민간에 맡기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규제 모델에 맡기는 그러한 구별에 따라서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상관관계입니다.

이 법은 원래 가상융합기술이라는 것에 조금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려면 당연히 서비스도 발전해야 되고 생태계도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뒤에 최경진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김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서비스이고 플랫폼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그러니까 둘의 방향성은 서로 다르나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법은 기술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조금씩 넓혀 나가자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게임 규제라든가 NFT·암호화폐, 핫이슈이기는 하지요. 성장 가능성도 큼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규제를 빠르고 쉽게 풀 거라는 기대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학부모, 청년, 청소년단체 또 여러 가지 모든 단체들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이런 곳에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것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비즈니스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인데요, 그러나 국회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규제 완화가 되면 좋은 일이겠지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이승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경진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실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한 게 한 십여 년 됐는데요, 이전에 좀 더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 기반을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 그 또한 굉장히 선제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가지고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메타버스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느냐가 이 법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개별 서비스 관점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완전히 폭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메타버스화시키는 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사회가 메타버스화시켜서 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관점으로 매우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메타버스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메타버스가 지금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아마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메타버스로 사실은 써 보면 다들 아마 첫 번째 마디가 ‘아, 좀 실망스러운 걸’ 이러한 반응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망을 통해서 더 실망하지 않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로서의 메타버스를 고려한다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메타버스를 완전히 혁신적인 경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기반 내지는 진흥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타파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도 우리가 단순한 개별 서비스로 바라보지 않고 전체 사회가 메타버스 사회로 바뀌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그러한 문제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아마 메타버스 사회로의 전환은 굉장히 늦어질 것이고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에서의 디바이드를 제거하거나 또는 역기능을 없애는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인식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진흥 기반을 만드는 것, 혁신 체계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이용자 보호라든가 또는 신뢰성 기반을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을 한번에 할 건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할 건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두 가지 법안 모두 다 하나는 진흥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혁신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국 이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러한 두 가지 법안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규제 이슈가 사실 계속 나오는데요. 메타버스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하나의 생태계이고 하나의 사회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그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통

제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사회 틀 속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메타버스 민주주의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자율적 통제체계가 갖춰진 또 실제로 실효성이 확보되어진 그러한 자율규제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규제를 무규제 같은 것과 동일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자율규제가 위킹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부에서 실효성 있게 규제체계가 작동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율규제에다가 일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형태, 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 이슈인데, 여기 보면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존에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나 혁신적인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에서 많은 추진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요.

메타버스야말로 진짜 모든 부처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디네이션인데 그러한 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정책적 의지와 함께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메타버스 사회로 전환되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바타를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바타가 진짜 우리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아바타를 쉽게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안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바타에 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도 사실 지금은 별생각 없이 하겠지만 정말 그게 하나의 사회가 돼 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질서 정

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논의가 정말 여러 부처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안이라는 것이 메타버스 하면 또 법안 2개가 나왔나—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기존의 경제발전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또 그것을 어떠한 실제 행정가라든가 또는 정치가를 불문하고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단기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롱텀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롱텀으로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고, 이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감사합니다.

진술인들께서 시간을 잘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 속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고 순서는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최경진·곽노성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이용해서 업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공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도 하나로 어떻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사회적 개념과 달리 법적인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과 규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부터 생겨서 걸림돌이 좀 작용될 것 같다는 우려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실제적인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고받아서 여쭙는 겁니다.

본 위원도 역시 메타버스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조문을 조정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인데 먼저 각계에서 제기하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두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진술인 **곽노성** 연세대학교 곽노성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산업이 어떻게 보면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체계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과방위라고 해서 과방위 소관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금융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암호화폐 부분이고 특히 웹 3.0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가상세계에서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가야지 이게 메타버스에 대

한 어떻게 보면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들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최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이슈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이슈이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이니만큼 일단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너무 구체적으로 하거나 또는 기술을 반영하면 변화할 수 있는 이 개념, 유연한 개념을 우리가 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념 자체는 넓게 보고 최대한 진흥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되 다만 그동안의 우리 인터넷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간중간 멈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메타버스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정부에서는 강제규제든 아니면 민간의 자율규제든 간에 일정한 행동 기준 같은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그 수범 주체가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법률에 순수하게 진흥뿐만 간다고 그러면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이라도 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의무 내지는 적어도 도덕적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책임을, 수범 주체 자체는 굉장히 좁게 내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은아 위원 말씀 주셨던 대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은 충분히 고민 좀 하고 의견 수렴해서 만들어져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인력 양성 관련된 것들 그러한 제반 마련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제가 예산 국회를 통해서 과기부 사업으로 메타버스 대학원 지원 사업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거든요. 인재 양성 과정에서 꼭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메타버스 회의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메타버스가 사실상 온라인 게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으로 가상공간에서 소통해 왔고 또 AR이나 VR이나 이런 기술도 접목되고 있고 또 이게 메타버스와 차이가 무엇이나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업계 구성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는 환금성에 대한 규제 차이’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게임에서 사행성, 환금성 규제를 좀 빼면 그게 메타버스다라는 뜻일 텐데 이러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정책적 차이가 되어 버린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의견에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와 게임이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 듣고 싶고,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을 어떻게 법적·정책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될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민 교수님께서도 진술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입장문 내셨거든요.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박노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 양성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이 꽃을 피울 때까지는 결국 밑에 깔리는 것은 인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규제 중심으로 해 가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게임하고의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쉬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부터 먼저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의 확장

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게임 관련 부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면서 피크를 찍다가 그다음에 다시 좀 잠잠해지면 그다음에 본연의 메타버스의 그런 세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최경진 그 질문도 역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8·2009·2010년도에 메타버스 관련된 대규모 연구 책임을, 연구 이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구 결과 중에, 하나로서 제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기초기술에 관련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 그래픽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래픽 분야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채굴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래픽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이 되는 기술, 응용 분야 말고 응용 분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초 분야에 대한 그런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인력 양성하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형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유형이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사회도 사실은 살다 보면 다양한 사행성 요소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굉장히 작은 서비스 하나로 바라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하나의 정말 다른 큰 것으로, 큰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그러면 지향점을 그렇게 보면 정말 메타버스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로서 게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기존에 말씀하셨던…… 사행성이라든가 우연성에 의존하는 게 사실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행성과 그런 우연성에 의존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저는 그렇지 않

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얼마든지 행위가
론적으로 봤을 때 분리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진술인 이승민 저는 메타버스와 게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만 게임은 메타버스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우리
에게 굉장히 불행한 것은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
의 정의가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오락
이 부수적인 경우에도 게임으로 취급해 왔기 때
문이고 그다음에 바다이야기 사건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강력한 사행성 규제를 사특법에서 하지
않고 게임법에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런 규제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나 메타버스는 저는 근본적으로 가상공간,
가상사회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그
게 가장 주요 특징이라고 보는데 게임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러나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은 규제의 탈게임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산업법
을 개정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이니 게임형 메타
버스와 그렇지 않은 메타버스를 구별해 내고 게
임형이 아닌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식별해서 그
것은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구별 기준은 분명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만 따져 본다면 오락을 주목적으로 기
획·제작을 한, 설계부터가 오락의 목적으로 한
그게 주목적인 경우만을 게임으로 봐야 되고 그
외에 일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오락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든가 게이미
피케이션의 방법론을 차용했다든가 소통의 공간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미 없으면 일단 안 하니
까 재밌으면 다 게임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벗
어나서 오로지 오락,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
을 좁게 좁게 좁게 해석해서 그것만을 게임으로
보고 그다음에 오락이나 그런 유희적인 요소들이
부수돼 있는 것들은 그것만으로 게임으로 취급하
지 않는다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게임 규제 자체도 글
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많이 낮춰야 된다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세 분.

○위원장대리 조승래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으로 이용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정
숙 위원님.

○이용빈 위원 저는 마을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
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승민 교수님하고 또 과기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의료계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의료·교
육 분야에 있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수술실에서 폐암 수술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의
메디컬아이피가 해부 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
트웨어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교육 과정을 도입하
고 있습니다. 또 일산차병원에서는 네이버 메타
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가상병원을 개원해서 운
영을 해 보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oloLens 2를 활용해서 원격 협진 솔루션 구축
을 일산차병원에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
니다. 특히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모바일 게임 기업인 컴투스하고 함께 컴투스라
고 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능한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원격진
료가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향하는 것은 다양한 커뮤
니티 케어를 포함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
는 노력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데 원격진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상당한 갈등 유발 요인도 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
다라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러한 것
들이 미래에 우리 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승민 부교수님의 생
각은 어떠신지, 과학기술과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의 차원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
니다.

○진술인 이승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
적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들은 의료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것인지,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용도인 것인지 진단의 용도인 것인지 치료의 용도인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하고 있고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료법에서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으로 인정만 해 주면 되는 문제이고요. 또 게임법은 이런 기능성 콘텐츠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진단 영역부터가 의료법의 원격진료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 사건으로는 조금은 풀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과 치료는 조금 다른 것이 특히 치료에서도 수술 영역으로 나가게 되면 이때는 고도의 통신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격진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이 5G 되면서 로 레이턴시(low latency)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연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원격으로 하고 특히 수술을 원격으로 하는 것은 일단 메타버스 문제를 떠나서 통신망 그 기술 문제부터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료법은 진단에서부터 특히 벽오지라고 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라든가 재활치료의 수단으로 그 자체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의료기기로 한 두어 개 정도 이미 허가가 나서 실제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해서 잘 적용을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 과기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허원석 과기부 차원에서는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아직은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단이나 교

육·훈련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법에 의한 규제적인 영역이 해소된다면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빈 위원 어쨌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런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막힌 곳을 뚫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협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승래 이용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정숙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최경진 교수님하고 이승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는데 이렇게 국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최경진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 거치면서, 각 방송사마다 이렇게 메타버스 방식의 개표 방송하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 간에 입장 차가 많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일례로 3조(기본 이념) 내용을 보면, 그 3조 규정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및 이용자 보호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메타버스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입법에 해당된다. 이것 말고도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많고 또 다른 법률과의 충돌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조 1호를 보면 메타버스를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으로만 국한해 댔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또 다른 축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증강현실 AR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영역은 법률안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부처 간의 갈등, 충돌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진술인 최경진 저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은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아까 제가 사실 거버넌스 이슈를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슨 말씀이나 하면 메타버스를 미래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생각하고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상당 부분 변형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형되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그런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을 법에다가 대원칙으로서 한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구현될 수도 있지요, 당연히. 하지만 사실은 콘텐츠만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세계 개념을 좁게 본다고 그러면 콘텐츠 중심 사회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상세계는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관점에서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가상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정 산업 분야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하나의 톨로 해서 전체 사회를 바꿔 가고, 우리 기본적으로 미래사회 경쟁력을 키워 보자는 그런 넓은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어떤 법·제도에서의 적용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메타버스 특성에 맞는 형태로 좀 이해를 각 부처에서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처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좋겠더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념과 관련해서는, 개념은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문만으로도 실제로 융합된 XR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XR이 보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연계되긴 하지만 또 그것이 완전히 오프라인에 그냥 실물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수정을 해서 실제로 XR이나 ER 같은 게 다 포함될 수 있게 만든 형태로 조문은 변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승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지금 이승민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관련해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수님께서 모 언론에 게재한 칼럼 내용 보면 ‘어떤 법에 진흥이라는 표제가 붙는다 해서 그 실질이 당연히 진흥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좀 전에 발표하실 때도 그 말씀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법체제와 상충돼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대셨어요. ‘그 적용 대상에 차등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성장 발전에 지장 초래될 수 있고 규제적 요소가 오히려 더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이용자에 대해서까지 일정한 의무 부과해서 자유로운 이용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빨리 여기서 대응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진흥법안 없이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술인 이승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업계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진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라고 했을 때…… 그런데 다만 우리는 워낙 규제를 꼼꼼하게 망라적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화돼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장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규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획·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율이 물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적재산권의 어떤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발전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진흥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쓴 칼럼의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특별히 몇 군데 이런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이 법이 해석하기 나름

이지만 우선적용 규정이 특히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법이 100% 진흥적인 법이라고 하면 사실 우선적용 규정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법에서 어떤 의무를 창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용 규정이 없고 타 법에 있는 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임산업법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 법에 규제적 요소가 더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의견을 드렸지만 타 법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용 규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단순히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산업이라든지 NFT라든지 아니면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마치 별도의 어떤 게임과 같은 그런 영역이다로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진흥법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 상상력 안에서만 규제 또는 진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좀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터졌던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터지면서 자극을 주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익성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그 서비스가 진화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메타버스를 규정하고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작은 그림 내에서 이 규제안을 생각하거나 진흥을 생각했을 때는 담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과 바로 연관돼 있는 동전의 양면들이 별도의 규제 체계 속에서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암호화폐 그다음에 생태계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상자산들을 실증시켜 주는 그리고 거래를 만들어주는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 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민 교수님하고 최경진 교수님 두 분 의견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최경진 사실은 메타버스 논의할 때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가 아마 가상화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메타버스가 과거에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 유인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유인인 경제적 유인이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원욱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끝어서.

○진술인 최경진 예.

마침 이번에는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NFT가 먼저 터지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가 돌아와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실제로 메타버스의 사용 가능성 같은 게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이 가상세계, 특히나 메타버스 속에서의 결제 수단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의 환금성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규율 체계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메타버스의 발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혁신적인 법 쪽에 반응을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된 규율 체계가 기존에 있다고 그러면 그와 좀 연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폐라는 단어가 법에 세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 한국은행법에 나오고 두 번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법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은 화폐는 한국은행만 발행하도록 규정을 해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하면서 합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전자화폐가 실제로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할 수 없다면 이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정의를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 내지 메타버스 화폐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합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메타버스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승민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타버스 환경에서 암호화폐나 NFT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은 게임산업법의 환금성을 제한하는 그 규정 때문인데요. 사실 그것을 없애 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굳이 만든다면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만 딱 집어 가지고 환금성을 제한하면 충분한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사특법이 있기 때문에 사특법에 따라서 경찰기관이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이것을 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을 잘 제거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서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의 업계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나 이런 규율 자체가 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 안 되면 메타버스 법안에 넣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게임산업법에 있는 규정을 없애고 그다음에 특금법은 특금법대로 가고, 그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꼭 해 줘야 될 역할 중의 하나는 지금 블록체인의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정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진짜로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형성되고 폭락하고 그래서 이게 일부 벤처 투자자들과 얼리어답터들의 이익으로만 귀속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온갖 부정과 남용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크게 버블이 터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을 때 그들이 할 이야기는 ‘그동안 정부 뭐 했냐’일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아서 이것은 내 잘못이야’라고 하는 국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부가 확실하게 시정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어떤 비난과 책임이 전부 정부로 돌아올 것이다,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시장에 개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시정해서 국민들에게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는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 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부터 손을 드셔 가지고……

○황보승희 위원 변재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원욱 변재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간단하게 손병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님하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정책국장님한테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제정할 적에 명료해야 되거든요,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여기 정의 규정에 보면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가치가 현저하고’, 앤드(and)입니다,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앤드지요,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앤드지요, ‘국가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앤드지요,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5개의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손병호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서의 전략기술은 사실은 지금 우리 공급망이나 어떤 국가 산업·경제·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외교·안보 또 멀게는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혁신 기술들을 다 포괄하는 전략기술로 저는 범위를 그렇게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어(or)의 개념이라면 넓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넓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첨단전략기술 산업법하고, 첨단전략기술 특별법이지요—산업이라는 단어를 뺐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니까—그것하고 첨단전략기술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서 용어 정의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5개 조건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만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살 때는 전부 외산만 산단 말이지요. 산업적으로는 전혀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아니지요. 그리고 시장에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구입하고 정부기관에서,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제품을 안 삽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 기술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외교·안보 측면의 가치가 현저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신기술·신산업 등 기반이 되는 기술’, ‘시급성’, ‘미래 경쟁력’ 이것을 갖다가 전부 앤드로 다 규정을 해 버리면 대상 기술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 이 법의 정의 관련해서 그게 앤드나 오어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앤드라든지 오어라는 부분을 약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행정부에서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자기들이 해석하는 법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그래서 보면 다섯 가지 측면이 무조건 다 고려는 되고요. 다만 이번에 선정할 때도 보면 외교·안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측면, 신기술·신산업 측면 그리고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 그다음에 시급히 기술개발할 측면, 그런 측면들을 다 해서 고려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럼 그것은 ‘하거나’예요. 지금 하는 얘기대로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해진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메타버스하고 가상융합경제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해석하는 사람들 나름이라고 하면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행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런 법을 국회는 만들어 줄 수 없지요.

그래서 메타버스법이 됐든 가상융합경제법이 됐든 메타버스나 가상융합경제라는 말이 소위 시중에서 시사적으로 용어가 정의된 적이 없거든요. 법에 의해서 콘셉츄얼라이제이션(conceptualization)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부에 의해서 산업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좀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변재일 위원** 답변 못 할 것만 질문했거든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보승희 위원**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호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이것을 8월에 시행되는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고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면서 양자, AI, 우주 등 신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 특별법안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노성 진술인에게서도 진술하신 것처럼 전략기술이라는 것과 국가첨단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첨단, 미래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

만,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그 역할을 구분 짓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손병호 첨단전략산업법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반도체 특별법으로 계획됐지만 어떤 특정 산업 지원이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기술은 주로 우리 성숙 기술 산업에 해당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기술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먼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기술이 제한적으로밖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이것에 따라서 2개의 법안을 동시에 패키지로 두 트랙으로 해서 지금 발의를 했고요. 우리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두 트랙 전략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을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발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촉진법 또 엔드리스 프론티어(Endless Frontier) 법이 산업·통상 대응전략을 대표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육성과 보호 전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2개 법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법들이 두 트랙 전략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의한 이 법들이 또는 시행되는 법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이 새로운 개념 정리를 통해서 기존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처럼 보다 전반적인 범부처를 통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첨단전략기술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는 법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나 교육부·보건복지부, 타 부처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지금 타 부처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극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동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 내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손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처 협의 중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 있는 기본적인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용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아시는 것처럼 미중 기술패권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사한 법이라든지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미국의 요청으로 NATO에서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는 NATO 사무총장이 있는 그 회의에서도 2시간가량 회의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이견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율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경진 진술인께서 ‘부처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부처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2개의 법안을 보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진술인 최경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황보승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승민 교수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안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승민 이견 제 사건인데요—제 사건이 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법안은 현재 부처체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밖에는 안 될 것이라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경제부 내지는 디지털경제위원회, 특히 그것이 독립행정위원회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경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방통위, 과기부 이렇게 관할 가지고 관할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거든요, 중복규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대략 대여섯 가지 사항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정도까지가 거의, 미흡하나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보승희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입법을 할 것이냐, 지금 메타버스는 게 어떻게 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흥도 시켜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세계에 이게 엄청 확장이 됐을 때 그것까지 대비해서 만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가지고 광노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략기술과 그다음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충돌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원자력이 저해됐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략기술이 왜 저해됐을까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만들게 된다면 원자력 부분은 조금 첨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전략기술의 최고 핵심은 뭔가 하면 컨트롤 타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것을 선정하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법들이 있으면 사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법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효율성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 전체를 보지 않고 법만 막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양자기술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선진국과의 차이가 육칠십 %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차세대 먹거리 중의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기술개발 부분이 있고 산업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적용을 하려 그러면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또 기술을 개발하러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차관 부분과 2차관 영역도 있는 것 같고. 1차관은 주로 기술개발 쪽이고 2차관은 산업 적용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 양자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기술개발이 먼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할 때 이런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메타버스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법을 발의한 취지가…… 사실 저는 메타버스는 뉴 월드(new world)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새로운 세계를 뒷받침할 만한 개발이 덜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술개발로 그것이 구현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좀 더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쉽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인간을 이롭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 화두이기도 하고요.

또 그와 같은 산업으로 발전하러 그러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아주 큰 새로운—뉴 월드라고 얘기하지요—그렇게 되는 공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시다마는 좀 더 큰 틀을 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흥과 규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변호사님께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부분을 진흥을 했었을 때,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시장으로만 맡겨 놓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세상을 좀 더 이로운 환경으로 가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면 좋습시다마는 그 어떤 부분이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승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되 개별적인 디테일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가 전형적인 공동규제 모델입니다. 저희가 원칙중심규제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정한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자들과 협회와 단체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먼저 첫 스텝을 가고.

이러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든 그것이 생태계를 형성해서 크게 성공하려면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비즈니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튜브가 됐든 메타가 됐든 음란물도 알아서 차단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커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느 정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점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유인에 따른 부분과 사회적 최적점 사이의 갭을 채울 수 있게 장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 중심의 규제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사회적인 해악이 발생해서 개입하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법적 규제에 가는 그런 단계적인 모델로 생

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오해라기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흥이 된다는 말 어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위원님?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이원욱 다음,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저 오기 전에 소개는 하셨습니까?

○임병헌 위원 예, 아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손병호 교수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할 때 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어떤 역할이나 의견을 제시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민 교수님에게…… 교수님께서 국가전략기술법의 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기술은 미래와 첨단을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법이 발의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국가전략기술원은 기존 출연연의 역할과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손병호 KISTEP의 손병호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은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조승래 의원실을 도와서 전략기술 육성법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많이 제공해 드렸고요.

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인데 여기의 법률 시행령 제정 이런 과정에서 기술관련된 내용들을 혁신본부하고 KISTEP이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수정 보완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인 박노성 앞서 말씀해 주신 기존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게 해석하면 거기에 해당되

는 것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실 모든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번에 법을 새로 제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새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략기술을 딱 특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연연하고의 중복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그쪽으로 예산이 가게 되면 기존 출연연에서 하는 데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출연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생긴 기관에 가서 예산을 받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주어진 정도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출연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출연연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일정 수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출연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손병호 하나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은 사실 첨단전략산업법을 아우르는 범부처 최상위 법률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 진흥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괄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듯이, 지금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산업이 약간 중복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포괄해서 범부처적으로, 우리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법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제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을 발의한 사람인데요.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각 부처마다 기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어디에는 전략기술, 미래기술, 첨단기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술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그것도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제가 하나 확인하게 됐던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이 갖는 안보적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들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의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이라는 것을 두어서 우방국들과하고의 기술협력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미 안보화돼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시다만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법명에 반도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이라고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명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산업 이전에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해서 체계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그러면 전략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고 그때 과기부가 마침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논의 끝에 과기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은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법과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성격과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안에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논의하는 과정 속에 조율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것은,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문턱, 반열에 올라섰지만 만약에 기술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추격을 당하게 된다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선 기술도 있고 쫓아가야 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국가가 정해서 뒤쳐진 것은 쫓아가야 되고 앞서 있는 것은 초격차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술 육성법을 제가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마침 부처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탔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점 감안하셔서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질문인데,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법은 저도 김영식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법안은 병합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 혹시 이승민 교수님하

고 최경진 교수님, 만약에 이 법안 2개를 병합해서 논의할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최경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파트는 세 가지에 대한 입법적인 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중에 진흥 기반과 혁신 이 두 가지가 각각 법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서요 하나로 병합하는 것은 저는 진술서에도 썼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양쪽의 개념 정의가 좀 다른 것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부처와의 관계 같은 것들, 역할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담아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인 가상 메타버스 화폐라든가 또는 자율규제체계,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 중의 하나가 협력적 공동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력적 공동규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율적 규제체계에다가 일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연합, 결합하면 될 것 같고.

또 의원님 법안에 있는 것처럼 특히나 혁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에서 충돌하는 것들도 있고 기존 법에 미처 규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찬가지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담긴다면 메타버스를 진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승민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법안의 진흥법안 측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중복됩니다, 지금 최경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율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제재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진흥법률에서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 개 법안이 디테일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조율이 돼야 되는데요. 아

가 우선적용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가상융합경제법안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플랫폼 내지는 서비스에 관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서 규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화폐 자율규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경진 교수님 존경합니다. 마는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저는 자율규제도 공동규제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법안의 구조에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거버넌스 체계 같은 경우에 두 법안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서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실 게 아니라면 그것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경제위원회 이런 걸 만들 게 아니라면 여기에 방통위도 들어오고 문체부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선만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서 협조하시고, 같은 정부니까 협조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창구라는 측면에서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제일 주안을 뒀던 점들이 이것은 새로운…… 아까도 진술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기존의 규제 질서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임시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사실은 법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조율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했던

법 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략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부처 협의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소위 논의를 할 때 부처의 협의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 부처 협의라는 것이 얼마나, 약속하고 합의해 놓고서 부처의 자기 이기주의에 따라서 말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기부는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박성중 간사님 질의 안 하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과학기술정책국장님 계시지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이견과 관련해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협의는 몇 차례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산업부 법하고 저희 부 법 간에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국가필수전략기술법하고……

○홍익표 위원 했는데 아직, 녹실회의까지 했는데 부처 간에 이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해 놓은 것을 산업부가 번복을 해서 이번에 이 법이 중복되고 이렇게 의견을 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 합의를 했는데 산업부가 번복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산업부의 그런 부분 합의 위반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제기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도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조승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운영방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시는 것처럼. 경제운영방향의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은 전략기술 전 분야를 컨트롤타워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산업부 법은……

○**홍익표 위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협의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산업부하고 협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일단은 그렇게 합의한 것을 산업부가 이번에 번복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항의하고 있고요.

○**홍익표 위원** 이런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가 하시든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든, 법안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일단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그런데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조항에 있어서……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법안소위에 올 것 아니에요. 법안소위 할 때, 그 전까지 부처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작업을 정부가 해야지요. 이것을 계속 이견 있다고 가져오면 법안소위 진전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에 이견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조율해서 수용을 할 거고요.

다만 산업부처럼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합의한 부분을 산업부가 번복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부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부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안소위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이견 있다는 것을 갖고 와서……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추진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손병호 본부장님!

○**진술인 손병호** 예.

○**홍익표 위원** 지금 출연연구소에 계신 거지요?

○**진술인 손병호** 예.

○**홍익표 위원** 특정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법안들, 진흥법을 만들 때 천편일률적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세우고 그다음에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 일종의 하나의 패턴처럼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진술인 손병호** 글썽요, 이번에……

○**홍익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면 기존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하고 새로운 연구기관이나 진흥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연구의 중점이 새로운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관으로 가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이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진술인 손병호** 여기 법률에도 전략기술원 신설, 설립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전략기술원에서 새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홍익표 위원** 코디네이터 기능이에요?

○**진술인 손병호** 펀딩 에이전시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그런 오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계속 손 본부장한테 드릴 텐데, 또 하나는 메타버스 산업도 그렇고 양자 산업도 그렇고 다들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의 이런 법률들이…… 우리나라 법률이 대개 아직도 포지티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규제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상 진흥인데 이게 거꾸로 현장에서는 진흥한다고 한 게 새로운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법안에 따른 문제점을?

○진술인 손병호 글썄요, 우리나라 법안이 워낙 포지티브 규정을 해 놔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메타버스 관련된 것은 그래도 상당 부분 네거티브 규제 법안으로 해 가지고 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다음에 이승민 교수님.

○진술인 이승민 예.

○홍익표 위원 메타버스 산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우려가 전달된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이승민 예.

○홍익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진술인 이승민 저는 일단 개인정보 관련해서 수집이나 이런 것들, 개보위가 개보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영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보위가 현재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개보위 활동이 축소되려면 현재 발의된 법안이 개보위의 어떤 특정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아서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위원님들……

아까 주질의 때 다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허은아 위원님 없으시고, 황보승희 위원님도……

김영식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 예타 면제하고 전략기술원 설립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에, 그게 최상위 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학기술기본법에다가 조항을 한두 개만 삽입해도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손병호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메타버스법도 그런데…… 그리고 아까 전략기술원은 또 다른 연구기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있는 연구재단이라든가 NST의 역할을 훨씬 강화시키면 전략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벌써 국회의원을 10년 차 하고 있는데 각종 진흥법이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부 규제법입니다, 전부. 실제 법상에서는 진흥법이어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가면 완전히 다 규제법, 규제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아까 이승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산업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는 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손병호 본부장님하고 이승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손병호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모든, 기술과 정책과 인력 양성 모든 것을 담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철학을 담은 최상위 법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은 되게 포괄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선언문만 담겨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 이승민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타당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상융합경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2년 가까이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주로 지적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표준화나 품질인증 이런 것을 해 놔더니 그게 규제가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아예 규정을 빼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행계획도 몇 년 단위로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결국은 정부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행해야 돼서 또 규제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리고 애초부터 디지털 경제에는 몇 년 단위 계획이라는 게 맞지

도 않습니다. 그것 옛날에 국토계획 할 때 토지에 관련된 것에서 유효한 시스템이거든요, 기본계획 실행계획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괜히 공무원들이 10월만 되면 이것 하다가 정신없어 가지고 해야 될 것 못 하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세상에서는 폐지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 자율규제도 마찬가지로인데 자율규제 단체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단체가 난립 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자율규제 단체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못 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상융합경제법 이야기할 때 최대한 규제로 느껴지는 것들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관해서 논의를 잘 해 주시면 정말 좋은 법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손병호 본부장님!

○진술인 손병호 예.

○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기본법에,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울 때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거기에다가 한 줄을 넣어요. 그러니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호를 하나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조의2가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이거든요. 거기에 한 줄 넣고 하면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손병호 글썄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계에서 봤을 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위원장 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고 상관 없이 또 규제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히려 망가뜨리는 이러한 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생각이 돼서.

○진술인 손병호 규제가 안 되도록 정부랑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무조건 규제 됩니다. 100% 됩니다. 이것은 99%도 아니고 100% 규제 됩니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느낀 겁니

다. 공무원 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규제 덩어리 됩니다.

하여튼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사회자가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간사 간 회의 등등이 필요해서요, 자리 정돈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원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안형환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원욱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소통을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2분)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원욱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4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원욱 추가로 의사일정 제64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박성중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간사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바쁘신 관계로 김영식 위원님께서 국민

의힘 간사를 맡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영식) 인사

(17시03분)

○위원장 이원욱 새롭게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무사히 통과시켜 주셔서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남은 기간 동안 조승래 간사님과 잘 협의해 가지고 상임위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국회의 오랜 관례와 관행을 깨고 박수를 한번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동안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제대로 일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박성중 전임, 직전 간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원욱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로 상정할 안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하여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66. 소위원장 개선의 건

(17시05분)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65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6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새롭게 간사를 맡으신 김영식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종전대로 허은아 위원님께서 맡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자세한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김영식·허은아) 인사

○위원장 이원욱 새롭게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우리 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안 처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허은아 소위원장님.

○허은아 위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방송통신심의위원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상희 위원이 작년 12월 17일 사퇴하여 공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허연희 전 부산MBC 사장을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추천된 위원의 구체적인 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06분)

○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의사일정 제67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윤영찬 위원님, 이것은 안전 상정하고 그다음에 또 할 때 그때 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이원욱 추가로 의사일정 제67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허연희 전 부산MBC 사장을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윤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윤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윤영찬 위원 허연희 신임,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한테 공지된 시점이 사실 어제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국회에서 추천하는, 정당 몫으로 추천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 후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과 24시간 전에 급하게 통보를 받고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 추천을 하든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후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상대 당에게 또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분명히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어느 당이든 최소 48시간 이전에 통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법안 심의도 그렇고 모든 의안에 대해서 48시간 이전에, 심사하기 이전에 검토보고서라든가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 특히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여야가, 어느 정당이나 48시간 이전에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연희 전 부산MBC 사장을 새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1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7)
13.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9)
14.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0)
15.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7)
16.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8)
17.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2)
18.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5)
 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8)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9)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9)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9)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9)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4)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8)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6)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0)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7)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4)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9)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7)
 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1)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0)
 3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92)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5)
 3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3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16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16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30)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628)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856)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859)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84)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95)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92)
4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1)
4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3)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4)
5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5)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0)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72)
5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9)
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8)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3)
5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0)
58.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888)
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6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6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5)
6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0)

(17시12분)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전에 참고로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의회와 진주시 시의회에서 항공우주청 설립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거정통부가 이번에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며 우주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아직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 관련 조문이 1개에 불과하여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기업 개방,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 신기술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통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되어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원

자력안전위원회 소관 5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 단말기에 탑재된 3번 법률안 검토 보고 요약 폴더의 첫 번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원칙과 진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정과 부처 간 소관이 중첩되는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인공지능 관련 제정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 민간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소관과 중첩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여야 하며,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정안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8항, 김영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 및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제정안은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산업 또는 가상융합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양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 학계 및 업계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메타버스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부처 간 소관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인력, 산업,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정의,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지정 관련 일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파급력이 큰 양자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5쪽입니다—정부가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그 과징금 환급 가산금의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유통점 간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환급가산금 요율 변경은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국가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서

를 참조해 주시고.

6쪽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기업의 명목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고, 지상파방송에 의한 여론 독과점 우려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인 언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특정한 자산총액이 아닌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자산 기준이 자주 변동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유사 사례인 (주)삼라와 (주)호반건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기업의 투자 확대에 의한 방송산업의 성장 가능성,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8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다수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방사선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및 기준, 국가의 책무를 마

련하여 방사전방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용어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동법 규정을 인용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방사전방호종합계획, 방사전방호정책협의회 및 방사전방호심의회,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출연연의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으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창출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성별의 기준에 대한 적정 여부 및 출연연뿐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도 포괄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정의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지정하며 국방·안보 분야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 기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 및 현행 국내 기술 육성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동 제정안이 주요 부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국제조약 체결, 기후위기의 급증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급·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민간 우주개발 지원시책 마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주신기술의 지정 기준,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전략의 내용과 절차 등에 다소 명확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분야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을 신설하는 대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조문을 수정하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국희 위원장님 처음 참석하셨지요, 상임위에?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위원장 이원욱 그래서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어 줄 수 있는 그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새겨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원자력 문제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이슈 또한 없어 보이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념화되고 자칫 잘못하면 진영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것을 제대로 키워 나가고 할 것인가 또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대체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 법률안 말고……

○위원장 이원욱 일단 이것은 끝내고요.

그러면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오늘 상정된 법안은 아닌데 그래

도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정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사실은 저희 기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돼서 방통위에서 오늘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인앱결제법안, 구글법안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앱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이제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붙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결제 시스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이 내놓은 방식을 보면 사실상 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구조 거기다가 아웃링크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통위원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방통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사실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아예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조차도 제대로 밝히지를 않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덜란드 공정위가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만들었던 인앱결제법안이 실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애플도 인앱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이런 의견은 밝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웃링크 제한 행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제반, 애플이든 구글이든 다국적 글로벌 앱마켓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 그리고 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공개도 하고 그리고 행위들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를 거쳐서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사실조사로 전환을 해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갖가지 입장들만 발표돼 있을 뿐이지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발표한 정책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지금 그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면, 실태조사는 곧 들어갈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가, 현행으로는 정책이 발표된 것이 과연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행법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공표하고 그 부분에서 유의할 것들을 고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법한 행위들이 진행된다면 그것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윤영찬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법안을 개정하고 그리고 어떤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얘기하고 토론했던 그런 개정의 방향, 앱 개발사들의 자유로운 결제방식의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시행령 단계로 가면서 또는 앱스토어나 플랫폼회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그 정신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는 바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도 시행령에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단순히 형식적인 허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구글이나 애플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강제를 함에도 형식적으로 법을 회피하는 이런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음,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 OTT가, 여기 자료에 보면 나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OTT 웨이브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2600원, 코인 충전은 3000원 또 티빙은 2100원 이렇

게 인상을 발표했어요. 인상을 발표한 이유가 구글이 4월 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외부링크를 금지하겠다고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 OTT와 유사한 다른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가격으로 비교를 해 보면 네이버 웹툰은 한 2000원, 리디북스 2000원 이렇게 다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인앱결제를 게임에서 다른 모든 콘텐츠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혹은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는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앱 생태계를 자유롭고 창의로운 생태계로 만들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들이나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는 사실 좀 한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실제로 저것을 이용자로 보고, 지금 저 0.7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글과 애플의 일종의 시장점유율이 70% 정도라고 했을 때 소위 국민의 주머니에서 저만큼의 돈이 구글로 추가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 정도 액수라면 저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추가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저게 다 구글한테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막고자 해서 구글갑질방지법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4월 1일 자로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으면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그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신속하게 판단을 못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상황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이제 내일모레 시행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시행이 되더라도 만약 위법행위가 있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방지가 되는 건데……

○조승래 위원 그리고 지금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콘텐츠업계에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콘텐츠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용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취지를 지금 구글은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간사님.

○김영식 위원 방통통신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께서 똑같이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법은 만들었는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구글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을 보니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 이깁니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앤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방통위원들 중에 국장·사무관 출신들까지 전부 다 김앤장에 가 있는데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행사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도 업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상술적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뭐 하겠다고 하시는데 불으면 법률적으로 맨날 지는 게임임을 뻔히 알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래 가지고는 외국

기업들 못 당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생겼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대한 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의 정신은 우회적으로라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 법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실질적인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김영식 위원 문제 제기를 하면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김영식 위원 거기에 이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그 판단이야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고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은 법과 시행령에 충실한 판단을 할 뿐입니다.

○김영식 위원 통상적으로 해 왔던 방식을 그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참 치밀하게 조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시행령 과정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금지행위 유형에 아웃링크 외부결제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그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아웃링크 금지행위가 과연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시행령을 만든 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런데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금지 행위로 들어가려면 그 내용이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는 못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행령 만들 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될 내용은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법을 고쳐야 되겠지요.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없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은 빈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발표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소송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의 양태들

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요.

○**김영식 위원** 좌우간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지금 있는 각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위법 소지에 대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이원욱** 추가로 없으십니까,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까 제가 대표발의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소유제한 기준을 유연화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다액 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관련된 방송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제한 기준을 정액이 아닌 비율에 의하도록 하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공정거래법상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도 정액이 아닌 GDP 대비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개정이 되었고, 지금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원욱**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 법률안 관련한 건 아니고요 현안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원욱** 예.

○**이용빈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KBS하고 방문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는 방문진하고 정수장학회를 주주로 두고 있고 또 KBS는 TV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특히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이들 공영방송을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연혁적으로 지금까지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결국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 인수위 측에서는 이게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KBS나 MBC의 운영상태나 경영상태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상이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상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EBS나 연합뉴스 또 KTV나 국회방송도 다 업무보고를 정부에서, 특히 인수위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용빈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인수위에서 KBS나 MBC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적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용빈 위원** 결국 이들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이들을 감시하고 예산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용빈 위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개혁 공약 중에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다짐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 아닌지, 실제로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를 위한 알뜰한 공약이 아니었나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유와 공공성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 위원장님께서서는…… KBS가 이러한 업무보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KBS가 스스로 그러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포기하고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운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대체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도 상정을 하고 또 국민의힘의 간사 위원님도 새로 선출하고 소위 위원장님도 새로 선출하는 이런 절차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1소위, 2소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소위는 법률안이 159개가 제출이 되고 90개가 통과돼서 56.6%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소위, 오늘 김영식 위원님이 소위원장으로서 선출되신 2소위는 398개가 제출이 되고 그중에서 59개가 처리돼서 14.8%, 그러는 바람에 저희 과방위의 법안 처리율이 26.8% 정도뿐이 안 돼서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법안을 포함해 가지고 2소위에 많이 밀려 있는 법안에 대해서 힘 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중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임혜숙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예.

○**위원장 이원욱** 오셔 가지고 한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제안설명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원욱** 그것 하셨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예.

○**위원장 이원욱**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8인)	◎조승래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5)
	김영식 정희용 홍석준	국민의힘(3)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11인)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6)
	◎김영식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국민의힘(4)
	양정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 (8인)	◎홍익표 김상희 이용빈 전혜숙	더불어민주당(4)
	정희용 홍석준 황보승희	국민의힘(3)
	양정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 (6인)	정필모 조정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3)
	◎허은아	국민의힘(1)
	양정숙 임병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조 기 열
전 문 위 원	한 성 구
입 법 심 의 관	박 동 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임 혜 숙	
제 1 차 관	용 홍 택	
제 2 차 관	조 경 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 경 수	
기획조정실장	이 태 회	
정보통신정책실장	박 윤 규	
네트워크정책실장	홍 진 배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 태 석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 현 준	
소프트웨어정책관	허 원 석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 정 삼	
과학기술정책국장	정 희 권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한 상 혁	
부 위 원 장	안 형 환	
이용자정책국장	김 재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 원 장	유 국 희	
안전정책국장	조 정 아	
방사선방재국장	신 재 식	

○출석 진술인

곽노성(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출석 위원(14인)

김 영 식	박 성 중	변 재 일	양 정 숙
윤 영 찬	이 용 빈	이 원 욱	임 병 헌
전 혜 숙	정 희 용	조 승 래	허 은 아
홍 익 표	황보승희		

○출장 위원(1인)

김 상 희

○청가 위원(3인)

정 필 모 조 정 식 황 희